

낙농경영을 위한 세무관리

노 시 환 미래세무회계 세무사

1. 소득세의 납세의무와 사업소득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귀속된 자연인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2.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개업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 및 납부 등의 행위를 하거나, 과세관청이 소득세의 결정·경정 및 처분을 하는 경우에 관할관청(관할세무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4.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이 됩니다.

II. 계정과목 등 세부사항

과거와 달리 알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충실히 지켜주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기초적인 사항을 기술하였으니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1.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 현황신고)

-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약품 등의 부가세 환급

- 1) 세금계산서 사본을 가까운 농협이나 축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2) 각 분기 분은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함 (예 : 1분기 분은 4월 25일까지 제출)

3. 축사건축

- 1) 축사를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고정자산임
- 2)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함
(종합소득세 신고-2012년 수입분은 2013년 5월에 신고함)

4. 4대보험

-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비중이 높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5. 인건비

- 1)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2) 일용직(아르바이트)은 고용, 산재보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같은 세대의 가족은 고용, 산재보험료가 없으며 가족임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6. 학원비

- 1) 본인이나 직원의 학원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교육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2) 자녀 학원비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7. 의료비

- 1) 사업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본인과 직원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2) 자녀 기타 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8. 청첩장, 부의금

- 1) 청첩장과 부의금은 각각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2) 청첩장은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의금은 지출결의서나 메모장에 관계, 발인장 소, 날짜, 장례식장,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9. 기부금

- 1)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의소득금액에서 이 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2) 지정기부금 : 불우이웃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며 1)의 나머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략 10%공제합니다.

10. 기타 비용

- 1) 복리후생비 : 직원식사, 간식, 야유회비용 등
- 2) 전력비, 차량유지비, 가스비, 수도료, 운반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통신비,

이자비용 등

11. 절세방안

1)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3만원이하 영수증(상대거래처명판과 날인)을 꼭 챙겨야 합니다.

★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 세법으로 부여한 법정 납세협력 의무로서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근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부과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III. 종합소득비과세 및 경비율

1. 농가부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1) 전액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범위

* 젓소 50마리, 소 50마리

* 돼지 700마리, 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 닭 15,000마리, 오리 15,000마리, 양봉 100군

참조 :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2)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농가부업 종류별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전액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축산규모를 초과하는 가축의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2012년 기준 : 14.7%)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text{매입비용} + \text{임차료} + \text{인건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2012년 기준 : 97.1%)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낙농업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천만원 미만이거나 해당연도 신규사업자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IV. 맺은 말

사업자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습니다.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총당금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시면 되고 신고 이전에 미리 상담 등을 통하여 준비하시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